

서울특별시 우면산터널 통행료 지원 조례안

(문병훈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77
----------	-----

발의년월일 : 2018년 10월 17일
발 의 자 : 문병훈 의원(1명)
찬 성 자 : 최영주, 노승재, 추승우,
김혜련, 김경영, 한기영,
김평남, 김춘례, 박기재,
이영실, 오중석, 오한아 의원
(12명)

1. 제안이유

서초구 서초동과 우면동을 연결하는 총 연장 3.0km의 우면산터널은 경기도에서 서울로, 서울에서 경기도로 출퇴근 등 용도로 이용하는 사람이 증가하면서, 서초구 일대 교통정체, 대기오염 등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나, 2004년 터널 개통 이후 거주 지역 주민들에 대한 지원이 전혀 없어 관련 민원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우면산터널 인근 주민들에 대한 통행료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가. 조례안의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 나. “통행료”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 다. 지역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 라. 지원 대상과 기준, 방법에 대해 규정함(안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 마. 업무협약체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유료도로법」
-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참조.
- 다. 기 타 :

서울특별시 우면산터널 통행료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우면산터널 조성으로 피해를 겪고 있는 지역주민에게 우면산터널 통행료를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이동권을 보장하여 지역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통행료”라 함은 지역주민이 우면산터널의 선암IC(우면산터널요금소)를 통과할 때에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2. “유료도로관리권자”란 「유료도로법」 제10조에 따라 유료도로관리권을 설정 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책무)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우면산터널 주변지역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통행료 지원) ① 시장은 제5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 대하여 해당 자치구와 공동으로 예산의 범위 안에서 통행료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통행료 지원 금액 및 서울특별시와 자치구간의 재정부담 기준은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제5조(지원 대상) ① 서울특별시 서초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한다.

② 제9조에 따른 업무협약에 따라 유료도로관리권자로부터 감면대상차량임

을 증명하는 감면카드를 발급받아 소지한 차량으로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지원 대상 차량에서 제외한다.

1. 서울특별시 이외의 지역에 차량 등록이 되어 있는 차량
2. 단체 또는 법인이 소유하는 차량
3. 사업용(영업용 포함) 및 렌탈 차량

제6조(지원 기준) ① 1세대에 차량 1대 이내로 지원한다.

② 감면횟수는 차량 1대당 1일 왕복 1회로 하며 감면횟수를 초과한 차량은 정상요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대상 차종) 지원 대상 차량은 승용차, 승차정원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로 한다.

제8조(감면카드 관리 등) 감면카드 발급 관리절차 및 부정사용 등에 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업무협약체결) 시장은 통행료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우면산터널 통행료를 관리하는 유료도로관리권자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시행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우면산터널 통행료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이번 서울특별시 우면산터널 통행료 지원 조례안은 제4조에서 시장으로 하여금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자치구청장과 공동으로 서초구 주민들에게 통행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비용이 발생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

3. 미첨부(2호) 사유

- 우면산터널의 최근 3년간 1일 평균 통행차량은 29,145대이고, 연평균 통행료 수입은 234.7억원으로 확인되나, 통행차량 중 서초구에 주민등록을 둔 주민의 차량대수를 확인 하기가 어렵고,
- 개정안의 내용이 서울시의 통행료 지원 범위(감면요율)가 명시되어 있지 않고, 자치구와의 분담 비율도 유동적이어서 통행료 지원의 범위 추계가 기술적으로 어려운 상황임

4.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남승우

사업평가팀장 황훈

예산분석관 한기백

☎ 02-2180-7952

e-mail : hophan@seoul.go.kr